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위임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신설에 따라 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를 범죄경력과 결격사유로 구분하여 명시하고(안 제22조의5제8항 신설),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2조의5제9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아울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회대상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함(안 제22조의5제10항 신설).

또한, 원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제3항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 00. 00. ~ 2026. 0. 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제6호의4 라목·마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⑨ 원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⑩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

다.

제22조의6 중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를 “법 제19조의5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의10제2항 중 “법 제19조의4제1항”을 “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12 중 “법 제19조의4제1항”을 “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본인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를 희망 또는 위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시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또는 위원직 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u> <u>「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u> <u>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u> <u>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u> <u>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u> <u>에 따른 범죄경력</u> 2. <u>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u> <u>「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u> <u>호, 제2호, 제6호의4 라목·마</u> <u>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u> <u>격사유</u> ⑨ <u>원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u> <u>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u> <u>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u> <u>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u> <u>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u> <u>에게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u> <u>서식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 후</u> <u>보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u>
<u><신 설></u>	

<신 설>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생 략)

②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

서를 첨부해야 한다.

⑩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 법 제19조의5제1항제10호-----

-----.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9

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
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
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
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
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
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
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
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조의5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2(시정명령) -----

----- 법 제19조의5제1
항-----

-----.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또
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④ · ⑤ (생 략)	<u>등 확인에 관한 사무: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7162